

검 토 보 고 서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병준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 이수완 의원 등 7인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9년 8월 13일

나. 회부일자 : 2019년 8월 14일

3. 제안이유

상위법령 인용조문에 대한 표기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용어를 정비함(안 제4조, 안 제11조, 안 제13조)

- “당해” → “해당”, “익월” → “다음 달”

나. 인용 조문을 명확히 표기함(안 제14조)

- (현행) “별표” → (개정) “별표 2”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9조의 개정에 따라 기존 '별표'가 '별표 2'로 개정되어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 기타 조문은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정비를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